
2025년 토종농작물 생산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 시행계획

2025. 7.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식품산업과)

2025년 토종농작물 생산농가 소득보전 지원 사업 시행계획

▶ 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입니다.

담당 기관	담당 과	담당 자	전화 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식품산업과장: 김 상 엽	064-710-3170
		농산특작팀장: 이 창 룬	064-710-3141
		담당 주무관: 김 지 윤	064-710-3143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토종농업자원의 보존·육성을 통한 종 다양성 확보
- 토종농작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생산비 일부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여

2.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8조
-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8호

II.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토종종자 재배·관리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
- 단, 농업경영체 정보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1,000m²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제출서류: 농지대장 또는 경작사실확인서,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토지소유자 동의서, 농장주 확인서, 임차 거래 내역,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종중회의록을 통한 임대차계약 등
-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경작자 본인이 납부한 재산세납부 증명서,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7호 서식)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토종 농작물 생산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직전 연도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대상 품목

- 대상품종: 18개 품종
 - 푸른독새기콩, 밤콩, 제비콩, 두블콩, 동부, 60일개, 던덕개, 단지무, 담배상추, 아욱, 고수, 메밀, 완두, 녹두, 조, 팥, 서리태, 붕어초(토종고추)

나. 토종종자 확인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한 토종종자 중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등 공공기관에서 직접 공급한 종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한 토종종자 중 토종종자 생산·증식포를 운영하여 채종한 종자를 농업인에게 분양*한 종자[별지 제6호서식]
 - * 재배 희망 농가는 종자 분양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공공기관 및 토종종자 생산·증식포 운영 참여 단체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

다. 지원대상 농지

-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지목이 농지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라. 지원 제외 농지 등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 다만, 2016.1.21.일 이전에 형질 변경하여 농지로 인정받아 지원받던 임야는 지원 가능
-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가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 소유자에게 임대차나 사용대차 계약서 등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단, 소유자가 불확실 한 경우 재산세 납부증명서 갈음 가능
- 신청농가 최소재배 면적기준 100㎡미만인 경우
-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 상태에서 채취할 경우
- 시비, 제초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작물을 50% 이상 수확하지 않는 경우(단, 자연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수확을 못한 경우는 현장 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해 재배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비: 10,000천원(도비 100%)
- 지원단가: 300원/㎡
 - * 지원단가는 사업 신청량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
- 지급요건: 참여 농업인 등은 토종종자 파종, 재배관리 등 이행점검 기간까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 단, 조기 수확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시(읍·면·동)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이행점검을 미리 완료토록 하고, 이행점검 완료 후 타 목적으로 활용 가능

5. 지원범위 및 지원한도액 기준

- 지급대상 최소 재배면적: 필지별 신청면적 100㎡이상

* 다만, 여러 필지에 토종농작물을 재배할 경우 1개 필지의 면적이 100m² 미만 이더라도 동일 작목에 대해 연접한 필지와 재배면적 합이 100m²이상일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 필지별 한 품목만 지원 가능하며 이모작* 시 중복 지급 불가

* 동일필지에서 1년에 두 종류의 토종농작물을 서로 다른 시기에 재배

○ 타 직불금과 중복지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제 등 타 직불금과 중복지원 가능하나, 경작자가 상이할 시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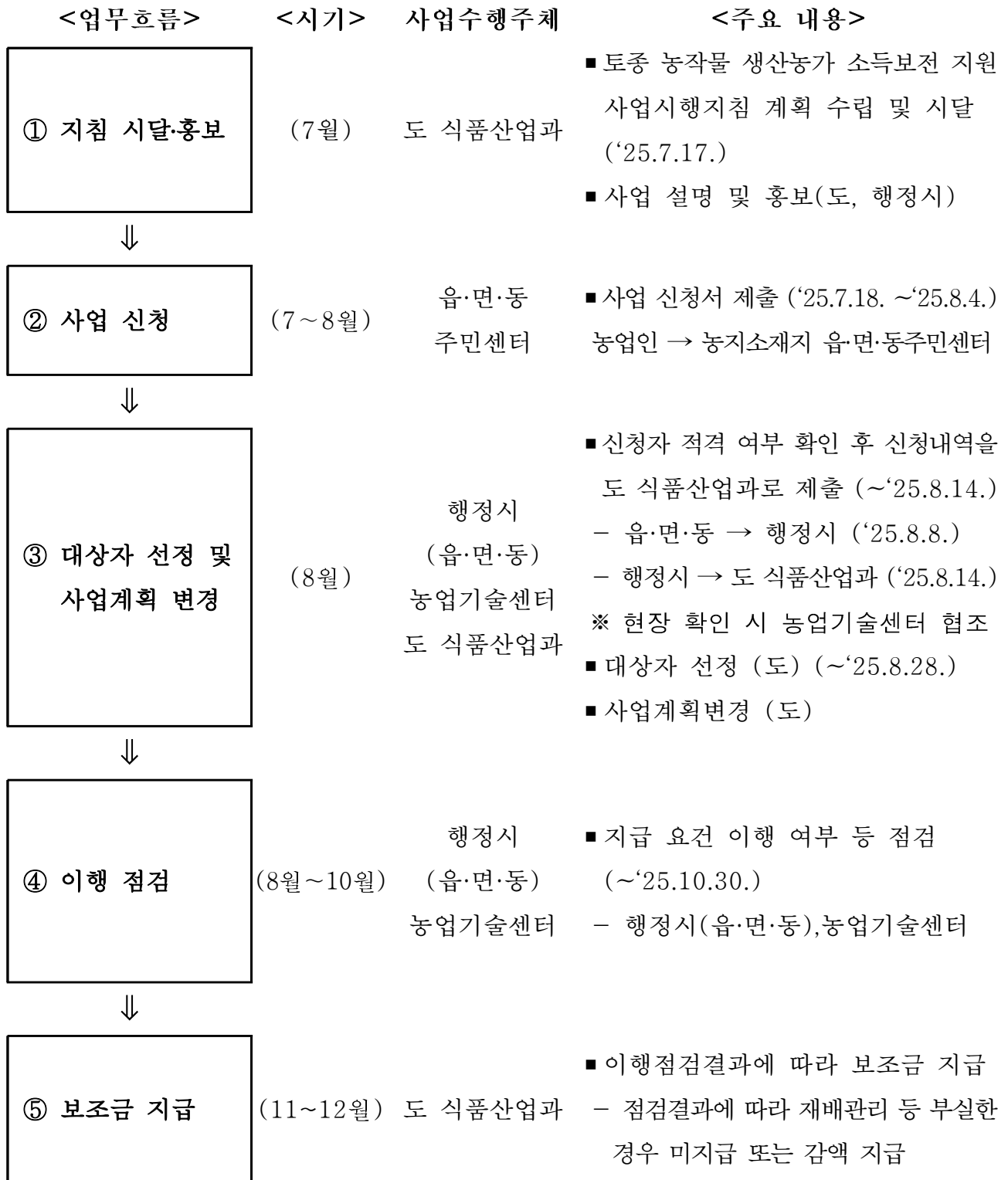
* 기본형 공익직불(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신청정보 등 사실관계 반드시 확인

○ 지원기준: 면적 구간별(100m²~1,000m²이하) 지급단가 적용

구 분	지원금액	비 고
100m ² 이상 ~ 300m ² 이하	150천원	천원 이하 절사
300m ² 초과 ~ 500m ² 이하	200천원	
500m ² 초과 ~ 1,000m ² 이하	300천원	
1,000m ² 초과 시	300원/m ² 적용 농가당 최대 1,000천원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추진체계



IV.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제주특별자치도

- 토종 농작물 생산농가 소득보전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계획 수립 및 시달
- 토종 농작물 생산농가 소득보전 지원 시범사업 신청 홍보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

- 행정시는 토종농작물 생산농가 소득보전 지원 시범사업 시행 지침을 농업인들이 알기 쉽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
 - * 행정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및 현수막 걸이대 등을 이용 홍보물 게시(게첨) 마을 앰프 방송, 리장단체장 회의 등을 통한 홍보
- 해당 농업인은 재배 신청 및 영농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관련 서류* (신청 종자 사진 포함)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 분양 시 종자 분양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함께 제출
 -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원칙), 농업경영 정보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농지대장, 경작사실확인서 및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 선정단계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시 신청 결과를 종합하여 대상자 확정 통보(도 식품산업과 → 행정시)

행정시(읍·면·동), 농업기술센터

- 읍·면·동에서는 사업대상자 신청자격 확인*등을 거쳐 사업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 행정시로 제출
 - * 대상자 및 대상 필지 적합 여부, 타인 농지 무단점유 확인, 재배필지 면적 확인

○ 행정시는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함께 토종종자 여부 확인* 후 토종농작물 재배 신청내역[별지 제2호 서식]을 수합하여 도 식품산업과로 제출

*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토종농작물 종자확인, ② 국립종자원 공급 종자 여부 확인, ③ 분양 받은 토종종자 확인. 단, 토종종자 생산·증식포 운영사업을 통해 채종한 종자 또는 채종한 종자를 분양 받은 종자는 관련 사업 참여 단체 입회하에 확인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행정시 → 농업인)

- 행정시(읍·면·동)에서는 배정된 사업량에 의거 토종농작물 재배를 신청한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지[별지 제3호 서식]

* 단, 향후 이행점검결과 등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3. 사업이행 단계

가. 작물재배관리

농업인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한 토종종자에 대하여 파종, 식재 및 재배관리 등 성실히 이행

나. 사업 변경 등

농업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 신청인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별지 제4호 서식]

- 사업대상 필지의 경작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토종농작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토종농작물 재배농가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

- 사업대상 필지* 및 대상 품목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행정시(읍면동) 확인 절차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대상필지 변경은 당초 신청면적보다 초과할 수 없음.

4.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

행정시(읍·면·동), 농업기술센터

- 토종농작물 이행여부 확인 결과* 토종 종자가 아님이 확인되거나 중도 포기한 경우, 타인 명의로 허위 신청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 행정시(읍·면·동), 농업기술센터, 토종종자 생산·증식포 운영사업 관련 단체 등 현장 확인
- 행정시에서는 이행점검 결과를 도 식품산업과로 통보

5. 보조금 지급 및 사후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 보조금 지급대상 확정
 - 지급요건 등 이행여부 확인 결과를 토대로 지급대상자 명단, 재배면적, 보조금 등 확정
- 사업비를 보조금 산정기준 및 제재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 농가별로 지급

행정시 및 읍·면·동

- 토종농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별지 제5호 서식]
 - 작성 및 비치: 원본(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본(행정시)

《제 재》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동시에 3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

[별지 제3호 서식]

토종농작물 생산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통지서

1. 사업대상자

성명

전화
번호

2. 재배현황

구분	대상농지			선정면적 (m ²)	보조금 예상액(원)
	소재지	면적 (m ²)	재배 품종		

※ 향후 이행점검결과 등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8호에 따라 귀하가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직인생략)

[별지 제4호 서식]

토종농작물 생산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 변경신고서

신고인	성 명						
	주 소				자택전화(휴대전화)		
당초 사업대상자	성 명						
	주 소				자택전화(휴대전화)		
신고인 (단체)	단체명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단체주소						단체전화(Fax)
	대표자명						구성원수
당초 사업대상자 (단체)	단체명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단체주소						단체전화(Fax)
	대표자명						구성원수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농 지 현 황							
농지소재지 (당초)				농지소재지 (변경)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m ²)	재배작물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m ²)	재배작물
(_____) 사유로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							
				2025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관련 증빙서류 -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 서식]

2025년 토종농작물 생산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 관리대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연번	품종	재배 소재지			공부상 면적 (m ²)	이행상황 점검결과			
		읍면	리동	지번		신청면적 (m ²)	불이행		이행면적 (m ²)
							면적(m ²)	사유	
①									
②									
③									
④									
합 계									
지급 확정	신청면적(m ²)			이행 면적(m ²)			직불금지금액(원)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사 진 대 장									
연번	파종기 또는 생육 초·중기				수확기(생육말기~수확)				
①									
②									

[별지 제6호 서식]

토종농작물 종자분양 확인서

인 수 인(재배희망농가)					인 도 인(관련 단체)				
농 가 명					농 가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 소					주 소				
연 락 처					연 락 처				
품 목	읍면	리동	지번	면적	종 자 분 양 량 (L, 분)	읍면	리동	지번	면적

상기 토종종자에 대해 인도·인수 하였음을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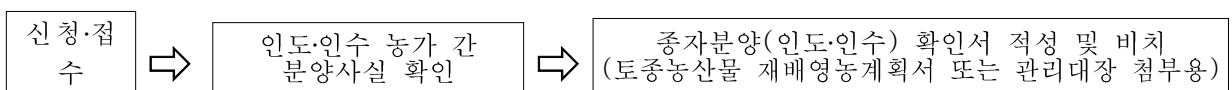
2025년 월 일

인 도 인 : (서명 또는 인)

인 수 인 : (서명 또는 인)

입회공무원 :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 귀하



서식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거지)	(전화번호 :)		
농지 소지재	(대표) 소유주	성명	
		연락처	

본인은 다음 제1항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아래 2항에 기재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본인은 '25년 토종 농작물 소득보전 지원사업 신청시 해당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농지소유 및 경작과 관련한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이지 않고, 해당 농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자 및 실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 사유(해당 사유에 √ 표시) : ① 사망자 소유농지(상속자 불분명), ② 행방불명자 소유농지, ③ 소유자 미복구 농지, ④ 외국인·해외이주자 소유 농지, ⑤ 소유자 다수 농지, ⑥ 종종농지
- 관련 서류 붙임 : ① 경작사실확인서

2. 만일 위의 1항에서 확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추후 농지소유자가 무단점유 등을 주장하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인정되어, 지급받은 직불금 전부를 환수하고 지급이 제한되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5배 부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단, 이 무단점유 확인서는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농지는 제외함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확인	음장·면장·동장